

# 2022 연금지급 정지제도의 이해



궁금하신 것을  
풀어드립니다!

연금일부정지

조정·해지 및 정산

연금전액정지



## 연금지급정지 제도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61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2조·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

### 연금 일부정지

연금 수급 중에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

### 연금 전액정지

연금 수급 중에 지역연금법 적용, 선출직 공무원 임용, 정부 전액출자·출연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금의 전액을 정지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연계퇴직연금

## 정지기간

(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2항,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3조 제2항)

- 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의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개업·취업·재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날(폐업·퇴직일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

# 01 연금일부정지



### 정지기준

- 적용대상 : 연금 외에 당해연도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그 **합계의 월 평균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월액(2022년 기준금액 : 24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포함되고, 이자·배당·기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 정지금액 :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 1/2까지 정지

#### ① 초과소득월액 산정

$$\begin{aligned}
 & \text{근로소득금액} \div \text{종사월수} \\
 & \quad \swarrow \text{총급여} - \text{근로소득공제} \\
 & \text{사업소득금액} \div \text{종사월수} \\
 & \quad \swarrow \text{사업소득} - \text{필요경비} \\
 & \text{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42만원)} - \text{초과소득월액}
 \end{aligned}$$

## ② 일부정지역 산정

- 초과소득월액을 「연금일부정지역 산정표」에 적용

초과소득월액	일부정지역
50만원미만	초과소득월액의 30%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100만원이상 150만원미만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15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60%)
200만원이상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 정지절차(2022년 일부정지 기준)

- 소득이 발생한 2022년에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우선 감액하고
- 2023년 국세청에서 소득을 확정하면, 2024년 1월에 최종 정산

### 소득 발생(2022년)

본인신고나 건강보험공단·국세청자료의 소득월액 기준으로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에 따라 우선 연금의 일부를 감액

- 근로소득 :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 사업소득 : 전전년도 국세청의 사업소득

### 소득 확정(2023년)

국세청이 2022년도의 소득금액을 확정하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고, 우선 감액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액 확정(10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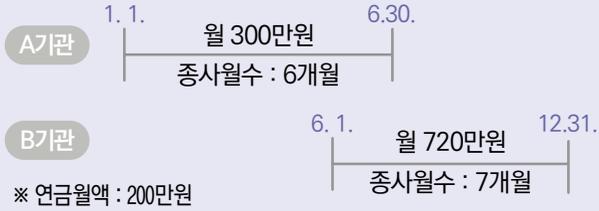
### 결과 반영(2024년)

정산 결과를 1월 연금에 반영하여 환급 및 추가감액 실시

- 소득발생 시점에 우선 감액한 금액이 확정소득 기준 감액분 보다 초과된 경우 : 전부환급
- 소득발생 시점에 우선 감액한 금액이 확정소득 기준 감액분 보다 미달된 경우 : 연금에서 추가공제(납부완료 시까지)

## 연금일부정지액 산정예시

### 2개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정지대상 기간: 1. 1. ~ 12. 31.
  - 당해연도 전체 소득과 전체 종사월수를 기준으로 산정
  - ※ 기관별 정지대상 여부를 구분하여 B기관 소득에 대해서만 정지하는 것이 아님
- 정지대상 총 급여: 6,840만원
  - A기관 1,800만원 + B기관 5,040만원
- 일부정지액: 월 1,000,000원(연 12,000,000원)
  - 당해연도 총 급여(6,840만원)에 전체 종사월수(1.1~12.31.)를 평균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일부정지액 산정

## 일부정지액 세부 산정표

(단위: 원)

구분	산정금액	산정방법
총 급여	68,400,000	A기간: 월300만원 × 6개월=1,800만원 B기간: 월720만원 × 7개월=5,040만원 →1,800만원+5,040만원=6,840만원
소득금액	55,230,000	총급여6,840만원-근로소득공제1,317만원 ※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공제 금액
소득월액	4,602,500	소득금액5,523만원÷종사월수12개월 →1년분의 소득금액 합을 종사월수로 나눔
초과 소득월액	2,182,500	소득월액 4,602,500원-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420,000원
산정액(월)	1,027,750	90만원+ {(2,182,500-200만원)×0.7 ※ 200만원 이상:90만원+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70%)
일부정지 적용액(월)	1,000,000	산정액이 연금월액(200만원)의 1/2를 초과하여 연금월액의 1/2까지 감액

## 2022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건표(정산정지액)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420,000원

월급액(①/12)	총급여(①)	근로소득공제(②)	근로소득금액(③=①-②) (사업소득금액)	일부정지 적용소득(③)의 만원미만 버린 금액)	소득월액(⑤=④/12)	평균연금월액(⑥)	초과소득월액(⑤-⑥)	정지산정액
3,362,750	40,353,000	11,302,950	29,050,050	29,050,000	2,420,833	2,420,000	833	240
3,750,000	45,000,000	12,000,000	33,000,000	33,000,000	2,750,000	2,420,000	330,000	99,000
4,000,000	48,000,000	12,150,000	35,850,000	35,850,000	2,987,500	2,420,000	567,500	177,000
4,583,333	55,000,000	12,500,000	42,500,000	42,500,000	3,541,666	2,420,000	1,121,666	410,830
5,000,000	60,000,000	12,750,000	47,250,000	47,250,000	3,937,500	2,420,000	1,517,500	610,500
6,250,000	75,000,000	13,500,000	61,500,000	61,500,000	5,125,000	2,420,000	2,705,000	1,393,500
7,083,333	85,000,000	14,000,000	71,000,000	71,000,000	5,916,666	2,420,000	3,496,666	1,947,660
7,500,000	90,000,000	14,250,000	75,750,000	75,750,000	6,312,500	2,420,000	3,892,500	2,224,750
8,333,333	100,000,000	14,750,000	85,250,000	85,250,000	7,104,166	2,420,000	4,684,166	2,778,910
9,000,000	108,000,000	14,910,000	93,090,000	93,090,000	7,757,500	2,420,000	5,337,500	3,236,250
9,818,917	117,827,000	15,106,540	102,720,460	102,720,000	8,560,000	2,420,000	6,140,000	3,798,000
10,833,333	130,000,000	15,350,000	114,650,000	114,650,000	9,554,166	2,420,000	7,134,166	4,493,910

※ 이 조건표의 연간소득금액은 소득업무에 12개월 종사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입니다.

※ 연금지급 정지액은 연금월액의 1/2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정된 연금지급정지액(월)이 본인 연금월액의 1/2를 넘는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1/2까지만 지급정지됩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출자기관에 재취업하여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기준소득월액(5,350,000)의 1.6배(8,560,000원)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정지액

# 02 조정·해지 및 정산



## 조정·해지(2022년)

- 2022년 소득에 대해 연금을 일부 감액 지급하던 중에 소득금액이 변동되거나, 소득이 종료(퇴직·폐업)된 경우는 신청을 통해 감액분을 조정하거나 해지

- 소득 금액 변동 → 조정 신청 → 감액분 감소(종료) 또는 증가
- 소득 종료 → 해지 신청 → 감액 종료(연금전액지급)

## 정산(2023년·2024년)

- 2022년 소득에 대한 국세청 확정 전 선정산을 원할 경우
  - 본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먼저 선정산하여 환급 및 추가감액을 앞당길 수 있으며,
  - 최종 국세청 확정소득에 따라 재정산 될 수 있음

### <신청 가능 시기>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2023년 3월부터
-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2023년 6월부터

- 최종정산 결과 2024년에 추가감액분이 발생한 경우
  - 연금에서 공제하되, 소득유무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 적용

- 소득이 없는 경우 : 연금의 20%로 매월 공제
  - 소득이 있는 경우 : 연금의 50%로 매월 공제
- 당해연도 발생 소득에 대한 우선감액에 따라 추가감액분이 다름

- 위의 추가감액 공제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를 희망하는 경우는 연금에서 초과공제를 신청하거나, 별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 할 수 있음

※ 납부계좌 : 국민 360101-04-046484  
(입금자명 : 성명+생년월일)

## 소득신고/소득 조정·해지/개별정산 및 납부 방법

### • 서류제출 방법

- 유형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 첨부 후
- 주소지 관할 지부로 제출(방문·팩스·우편)

### <신청서 경로>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연금수급자용

### • 인터넷 신청 방법

- 공단 홈페이지「내연금보기」에서 신청 가능

### <인터넷 신청 경로>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 내연금보기 → 연금정보  
→ 연금일부정지 →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 또는 일부정지  
연금초과공제 신청 → 유형별 해당사항 선택 → 저장·신청

### • 제출서류 및 신청 절차

유형	방법	제출 서류 및 절차
소득신고	서류제출	「소득신고서」와 소득확인 가능서류(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의 경우 증빙자료 미제출
	인터넷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에서 신청사유 '소득신고' 선택 후 내용 저장·신청
소득조정 또는 해지 신청	서류제출	「연금일부지급정지 해지·조정 신청서」와 증빙서류 • 해지 : 퇴직증명원 또는 경력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원 • 조정 :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인터넷	소득신고/조정/해지신청에서 신청사유 '소득변동' 선택 후 내용 저장·신청
선정산	서류제출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월부터 선정산 가능) • 근로·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6월부터 선정산 가능)
개별 정산	서류제출	소득금액증명원,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증빙자료
연금 초과공제	서류제출	「연금일부정지 정산차액 추가공제 신청서」 ※ 증빙자료 없음
	인터넷	일부정지공제신청에서 공제희망금액 선택 후 저장
납부 (전부 일부)	계좌이체	• 계좌번호 : 국민 360101-04-046484 • 예금주 : 공무원연금공단 • 입금자명 : 성명+생년월일



## 회사에 취업하거나 개업 또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개업 또는 임대소득으로 인해 초과소득월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소득발생시점에 공단으로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초과소득월액=(총 소득금액/중사월수) -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 취업의 경우 공단에서 우선 감액한 후 별도로 안내 (1~2개월내 알림톡, 우편발송 등)하지만 안내를 못 받은 경우에는 개별 소득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법 : 6쪽 소득신고 / 소득조정·해지 / 개별정산 및 납부방법 참조

## 부동산 임대소득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에 포함하고 있어 다른 사업소득과의 형평성 문제 및 국민연금의 소득심사제도에서도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16. 1. 1.부터 정지대상 소득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근로나 사업소득에 대한 감액분을 직접 산정해 볼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연금수급자 화면 바로가기 → 연금일부정지 → 일부정지금액 산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연금에서 대여학자금 공제 중에 근로소득으로 인한 우선감액이 되거나, 전전년도 감액이 덜되어 추가감액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여학자금 등 공제 합계액이 연금 1/2 미만인 경우 연금에서 공제하고,
- 공제 합계액이 연금 1/2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에서 초과공제 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감액공제 순서	앞순서 공제로 공제되지 못한 경우
우선감액 + 대여학자금	① 우선감액 ② 대여학자금	대여학자금에 대해 연금 초과공제신청이나, 전부 또는 일부납부
우선감액 + 추가감액	① 우선감액 ② 추가감액	추가감액분에 대해 연금 초과공제신청이나, 전부 또는 일부납부
우선감액 + 추가감액 + 대여학자금	① 우선감액 ② 추가감액 ③ 대여학자금	추가감액분, 대여학자금 또는 두 항목에 대해 연금 초과공제신청이나, 전부 또는 일부납부

- 대여학자금의 연금 1/2 초과공제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용자서식에서 「대여학자금 초과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공유복지실(FAX: 064-802-2866)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금전액정지



## 2022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 (198개)

### 정지대상

-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
  - 대통령, 국회의원(비례대표 포함),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의회의원 및 교육감
-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임직원으로서 채용되어 근로소득 월 평균액이 전년도(2021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535만원)의 1.6배(856만원) 이상인 경우

###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

-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제3호~제5호의 해당 기관
  - 3호 기관: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공공기관
  - 4호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 5호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

※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근로소득 월 평균액이 856만원 미만일 경우 일부장지 적용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가축생방역지원본부</li> <li>기공문제관리공단</li> <li>강남구도시관리공단</li> <li>강동구도시관리공단</li> <li>강릉관광개발공사</li> <li>강북구도시관리공단</li> <li>강서구시설관리공단</li> <li>강원도개발공사</li> <li>강진군문화관광재단</li> <li>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li> <li>경기관광공사</li> <li>경기주택도시공사</li> <li>경기평택항만공사</li> <li>경남개발공사</li> <li>경상북도개발공사</li> <li>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li> <li>경제인문사회연구회</li> <li>경주시시설관리공단</li> <li>고양도시관리공사</li> <li>과천도시공사</li> <li>관악구시설관리공단</li> <li>광명도시공사</li> <li>광주광역시관광구시설관리공단</li> <li>광주광역시도시공사</li> <li>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li> <li>광주광역시명성교육진흥원</li> <li>광주도시관리공사</li> <li>광주복지연구원</li> <li>광주환경공단</li> <li>광주광역시시설관리공단</li> <li>구로구시설관리공단</li> <li>구리농수산물공사</li> <li>구리도시공사</li> <li>구미시설공단</li> <li>국립해양박물관</li> <li>군포도시공사</li> <li>금천구시설관리공단</li> <li>김대중컨벤션센터</li> <li>김포도시관리공사</li> <li>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li> <li>김해시도시개발공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보령시시설관리공단</li> <li>부산관광공사</li> <li>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li> <li>부산교통공사</li> <li>부산도시공사</li> <li>부산시설공단</li> <li>부산지방공단스포츠원</li> <li>부산환경공단</li> <li>부여구시설관리공단</li> <li>부천도시공사</li> <li>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li> <li>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li> <li>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li> <li>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li> <li>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li> <li>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li> <li>인천교통공사</li> <li>인천국제공항공사</li> <li>인천도시공사</li> <li>인천스마트시티(주)</li> <li>인천시설공단</li> <li>인천환경공단</li> </ul>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③ 사천시시설관리공단</li> <li>새만금개발공사</li> <li>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li> <li>서울교통공사</li> <li>서울시설공단</li> <li>서울에너지공사</li> <li>서울주택도시공사</li> <li>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li> <li>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li> <li>성남도시개발공사</li> <li>성동구도시관리공단</li> <li>성북구도시관리공단</li> <li>세종도시교통공사</li> <li>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li> <li>송파구시설관리공단</li> <li>수원도시공사</li> <li>수원시시설관리공단</li> <li>수원시국립예술센터</li> <li>수자원공사(주)</li> <li>시흥도시공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아산시시설관리공단</li> <li>안동시시설관리공단</li> <li>안동시한국정신문화재단</li> <li>안산도시공사</li> <li>안산인재육성재단</li> <li>안성시시설관리공단</li> <li>안양국립외국어대학교 공동육성지원센터</li> <li>안양도시공사</li> <li>양산시시설관리공단</li> <li>양주도시공사</li> <li>양주시시설관리공단</li> <li>양평공사</li> <li>여주시도시관리공단</li> <li>여주도시관리공단</li> <li>연천군시설관리공단</li> <li>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li> <li>영양고추유통공사</li> <li>영월군시설관리공단</li> <li>오산시시설관리공단</li> <li>용산구시설관리공단</li> <li>용인도시공사</li> <li>용인시자원봉사센터</li> <li>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li> <li>울산광역시도시공사</li> <li>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li> <li>울산시설공단</li> <li>울주군시설관리공단</li> <li>웅천구시설관리공단</li> <li>의왕도시공사</li> <li>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li> <li>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li> <li>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li> <li>이천시시설관리공단</li> <li>인천관광공사</li> <li>인천광역시강화군시설관리공단</li> <li>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⑤ 장수한우지방공사</li> <li>재외동포재단</li> <li>전남개발공사</li> <li>전북개발공사</li> <li>전주시시설관리공단</li> <li>정선군시설관리공단</li> <li>제주관광공사</li> <li>제주에너지공사</li> <li>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li> <li>충로구시설관리공단</li> <li>충주시시설관리공단</li> <li>충량구시설관리공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창녕군시설관리공단</li> <li>창원레프츠평크</li> <li>창원시설공단</li> <li>천안시시설관리공단</li> <li>청도공업사임공사</li> <li>청주시시설관리공단</li> <li>춘천도시공사</li> <li>충북개발공사</li> <li>충주시시설관리공단</li> <li>충청남도개발공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코레일유통(주)</li> <li>⑧ 통영관광개발공사</li> <li>⑨ 파주도시관광공사</li> <li>평택도시공사</li> <li>포천도시공사</li> <li>포항시시설관리공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하남도시공사</li> <li>한국공항공사</li> <li>한국교육학술정보원</li> <li>한국국방연구원</li> <li>한국제철협력단</li> <li>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li> <li>한국농어촌공사</li> <li>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li> <li>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li> <li>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li> <li>한국산업은행</li> <li>한국산업인력공단</li> <li>한국석유공사</li> <li>한국수자원공사</li> <li>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li> <li>한국장애인고용공단</li> <li>한국조폐공사</li> <li>한국철도공사</li> <li>한국투자공사</li> <li>함안지방공사</li> <li>화성도시공사</li> <li>화성시문화재단</li> <li>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li> <li>1202산불재단</li> <li>88관광개발(주)</li> </ul> |



**서울지부**

Tel. 02-560-2459  
02-560-2553  
02-560-2554  
Fax. 02-560-2840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6층

**경인지부**

(경기동·북부) 02-560-2587  
(경기 남부) 02-560-2928  
(경기서부, 인천) 02-560-2255  
Fax. 02-560-2600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서울상록회관 6층

**부산지부**

(부산) 051-630-6815  
(울산, 경남) 051-630-6845  
Fax. 051-630-6878  
48745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공원로 23(범일동)  
KT범일타워 6층

**대전지부**

(대전) 042-600-0560  
(충북) 042-600-0533  
(충남) 042-600-0532  
Fax. 042-600-0501  
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세종지부**

Tel. 044-410-1304  
Fax. 044-410-1320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광주지부**

(광주) 062-350-5061  
(전남) 062-350-5062  
Fax. 062-350-5090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대구지부**

(대구) 053-715-5435  
(경북) 053-715-5434  
Fax. 053-715-5404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강원지부**

(춘천, 영동) 033-854-4710  
(원주, 영서) 033-854-4716  
Fax. 033-854-4717  
24436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층

**전북지부**

(전주) 063-281-7702  
(전북) 063-281-7703  
Fax. 063-281-7720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제주지부**

Tel. 064-802-1606  
Fax. 064-802-1650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1층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관련 모든 상담은 공무원연금 콜센터

**1588-4321**